



보도자료



제공일자 2013. 11. 15.

총 1면

www.nec.go.kr

TEL 02)503-2791

FAX 02)507-2632

2013년도 4/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

= 정치자금법에 따라 4개 정당에 총 95억여 원 지급 =

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
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 정치자금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2013년도 4/4분기 경상보조금 95억 1,850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·지급하였다.

《 2013년도 4/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》

(단위 : 원)

합 계	새누리당	민 주 당	통합진보당	정 의 당
9,518,500,000	4,343,540,090	3,982,075,850	684,472,710	508,411,350
100%	45.6%	41.8%	7.2%	5.4%

정치자금법 제25조 및 규칙 제30조의3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분기별로 균등 분할 지급하고, 4/4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11월 15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.

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%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고,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%씩을 각각 지급한다.

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,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·지급한다.